

#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114
----------	-----

제출년월일 : 2004.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유사목적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을 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로 통폐합, 각 기금 계정별로 운영  
⇒ 기금의 효율성 극대화
- 운영성과가 미흡한 저소득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며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기금 운용의 합리화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규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

## 2.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운용관리(제4조)

-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으로 구분,
- 각각 별도 계좌로 설치관리

### 나.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 수립(제6조)

### 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환경복지과장)을 두고 각 계정별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둠(제7조)

### 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해 평창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설립(제9조 내지 14조)

- 공무원 및 민간인등 15명

### 마. 기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해 각 계정별 단위사업을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기금을 보조하여 추진할 수 있음.(제15조)

### 바.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의 이차보전대상은 금융기관등에서 대여받은 자금이 2천만원 이하며, 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 기간중에 한하고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이자율의 15% 범위내에서 한다.(제17조)

- 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한도액은 2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사업자금은 1천만원 한도며, 대여금 상환은 3년거치 3년균분상환이며 대부이율은 연 2%, 연체이자율은 연5%의 이자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이자를 무이자로 한다.(제19조)
- 아.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조례, 평창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함. (부칙 제2조)
- 자. 기 용자된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중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회수하되 기금 및 회수액 수입은 기초생활보장계정의 기금으로 하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각 계정의 기금으로 한다.(부칙 제3조)
- 차. 기 용자된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중 대여자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용자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부칙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2004-257호(2004. 7. 7)

#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

##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노인복지법 제 4조, 여성발전(1989년)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4. "이차보전"이라 함은 금융기관 대출금리중 일정비율을 군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제 2장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강원도 및 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7.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및 여성발전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당해년도 기금 지출의 15% 이하)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③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된 장애인 단체 육성

2. 장애인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3. 평창군 장애인회보 발간
4.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공동작업장 운영
5.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교실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④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내용
7.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 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기타 군수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여성발전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및 홍보
5.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기금운용위원회

제9조(설립)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평창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군 의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기초생활보장·장애인·노인·여성복지분야의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 자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각 계정별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기금의 지원

제15조(기금의 보조)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5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각 계정별 단위사업을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기금을 보조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대상) 제5조 제1항에 의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 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제17조(이차보전) ①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이차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중에 한하며, 이차보전율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대여받은 자금 금리의 15% 범위내에서 보전한다.

제18조(지원방법등)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절차, 방법에 대하여는 평창군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자금대여 및 상환) ①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금 대여한도액은 자활공동체당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대여금 신청시에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연대보증하거나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의 수와 자격 및 담보물건의 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제5조제1항제3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자금은 1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여해줄 수 있다.

③대여금 상환은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에 대부이율은 연 2.0%이하이며, 거치기간중 발생한 이자를 연 1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매년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환기간 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대여금 상환 거치기간을 무이자로 한다.

⑤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며, 대여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그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신청) 기금을 보조 또는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 변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①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 대여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대여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회수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중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금을 대여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기금을 지원받거나 대여받은 기관·단체가 파산하거나 해산된 때
3.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4.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평창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용자된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 및 회수액 수입은 기초생활보장계정의 기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평창군장애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장애인복지계정 소관기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평창군노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노인복지계정 소관기금으로 한다.

④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평창군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여성발전계정 소관기금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 ①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용자된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중 대여자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파산선고자)의 용자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②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 관계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에 관한 법률

-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94.3.16)
  -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 국(1669) 사회복지보장법에 관한 법률

- 제44조(보장기금의 적립) 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동법 시행령

- 제41조(보장기금의 설치)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제42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 ②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 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 제44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기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5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제46조(기금의 지도·감독)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 및 시·군·구의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동법시행규칙
- 제42조(기금의 운용·관리실적 보고)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보장기금의 운용·관리실적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 까지 하여야 한다.

## □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법률

-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책을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노인복지법에 관한 법률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여성발전기본법에 관한 법률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 □ 지방재정법에 관한 법률

- 제29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②세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 
- 제110조(기금의 운용등) 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각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동법시행령

-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